주체의 사회주의법치국가의 본질과 특징

최 일 복

사회주의법치국가의 혁명적본질을 밝히는것은 그를 성과적으로 건설해나가는데서 선 차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기초적인 문제이다.

사회주의법치국가의 혁명적본질이 과학적으로 정립되여야 그 건설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을 확립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법치국가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 들을 옳바로 풀어나갈수 있다.

오늘 부르죠아지들과 그 어용학자들은 자본주의국가를 법치국가로, 자본주의사회를 《민주주의적인 법치사회》로 미화분식하고있다. 지난날 사회주의를 건설하던 쏘련을 비롯한 동유럽나라들에서 《민주주의적인 법치사회》를 건설한다는 미명하에 부르죠아법치주의를 통채로 끌어들인 사회주의배신자들의 반혁명적책동이 묵인조장된것은 이 나라들에서 사회주의법치에 대한 사상리론적해명이 이루어지지 못한것과도 관련된다.

사회주의국가를 법치국가로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자본주의법치국가와 근본적으로 구 별되는 사회주의법치국가의 혁명적본질부터 정확히 밝혀야 한다.

일반적으로 법치국가라고 할 때 그것은 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국가를 의미한다. 사회주의법치국가도 국가관리, 사회관리에서 법을 중시하고 법으로 나라를 관리해나가는 국가이다. 그러나 여기에 사회주의법치국가의 혁명적본질이 있는것은 아니다. 누구를 위해서 국가관리, 사회관리를 법으로 진행하여야 하는가를 옳바로 밝혀야 자본주의법치국가와구별되는 사회주의법치국가의 혁명적본질을 정확히 해명할수 있으며 그 건설을 사소한좌우경적편향도 없이 성과적으로 진행해나갈수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법치국가건설사상을 우리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더욱 심화발전시켜 주체의 사회주의법치국가의 혁명적본질을 명 확히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나라는 법이 인민을 지키고 인민이 법을 지키는 진정한 인민의 나라, 주체의 사회주의법치국가입니다.》

주체의 사회주의법치국가의 혁명적본질은 법이 인민을 지키고 인민이 법을 지키는 진정한 인민의 국가라는데 있다. 다시말하여 법의 제정과 집행의 전과정이 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법적으로 옹호보장해주는데로 지향복종되며 높은 준법의식 으로 무장된 인민대중의 자각적인 법무생활에 의하여 온 사회에 정연한 법질서가 확립된 사회주의국가이다.

주체의 사회주의법치국가는 우선 법이 인민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을 옹호보장해주는 국가이다.

사회주의국가를 법치국가로 건설하는 근본목적은 바로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을 법적으로 철저히 옹호보장해주는데 있다.

사회주의법은 인민대중을 위한 법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사회주의헌법을 기본법으로 하는 모든 법들이 다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요구와 의사를 반영하여 제정되며 인민대중의 리익에 맞게 집행된다. 그러므로 법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모든 국가기관들의 활동이 철두철미 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법적으로 옹호보장해주는데로 지향복종되게 된다.

주체의 사회주의법치국가는 또한 인민이 법을 자각적으로, 의무적으로 지켜나가는 국가이다. 법의 모든 내용이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의사와 요구를 반영하고있는 사회주의사회에 서 인민대중에게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를 법적으로 옹호보장해주기 위한 법치도 응당 인민대중에게 의거할 때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되여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 법집행의 담당자는 다름아닌 인민대중자신이다. 인민대중은 사회주의법규범과 규정의 요구대로 일하고 생활 하는것을 통하여 법에 반영되여있는 자기의 자주적인 의사와 요구를 자신들의 활동으로 직접 실현해나간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법규범과 규정에 대한 자각적이며 의무적인 준수집행은 인민대중 자신의 삶의 요구로 되고있다. 그것은 사회주의법규범과 규정을 떠나서는 인민대중의 자 주적인 삶에 대하여, 민주주의적인 자유와 권리의 실현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기때문이다.

이처럼 주체의 사회주의법치국가는 법이 인민을 지키고 인민이 법을 지키는 진정한 인민의 국가라는데 혁명적본질이 있다.

사회주의법치국가건설에서는 사회주의법치국가의 이러한 혁명적본질을 철저히 고수하고 그에 맞게 사회주의법치국가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을 풀어나가야 한다.

주체의 사회주의법치국가는 자기의 혁명적본질로부터 자본주의법치국가와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특징을 가진다.

자본주의법치국가와 구별되는 사회주의법치국가의 특징은 첫째로, 로동계급의 당이 령도하는 법치국가라는데 있다.

사회주의법치국가는 반드시 당의 령도밑에 건설해나가야 한다. 이것은 법과 정치의 호상관계로부터 흘러나오는 원칙적요구이다.

정치와 법의 관계는 한마디로 말하여 내용과 형식, 목적과 수단의 관계라고 말할수 있다. 일반적으로 형식은 내용에 의하여 규정되며 수단은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 따라서 법은 정치에 복종하여야 하며 정치실현에 복무하여야 한다.

법은 정치의 표현형식이며 실현수단이다.

법은 정치를 명확한 행위규범으로 표현한다. 정치를 표현하는 형식에는 법외에도 정 강을 비롯한 정치적문건들이 있다. 정강을 비롯한 정치적문건들은 정치적목적과 요구를 론리적으로 서술하는 방법으로 정치를 표현한다. 그러나 법은 정치적목적과 요구를 확정 적이며 구체적인 행동규범으로 표현한다.

정치실현의 수단인 법은 정치적목적과 요구를 실현하는데 복무하는것을 사명으로 한다. 정치적목적과 요구는 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집행하여야 할 행동규범으로 밝혀지게 되며 정치적목적과 요구는 법을 수단으로 하여 실현되게 된다. 법은 정치적목적과 요구를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의무적으로 집행해야 할 행동규범으로 표현하기때문에 정치의 위력한 수단으로 된다.

법이 정치보다 우위를 차지하며 따라서 정치는 법에 복종되여야 한다는 부르죠아적 인《법의 지배론》이나《법치주의》는 법과 정치의 호상관계를 외곡한 관념론적이며 비과 학적인 궤변이다.

법은 어디까지나 국가주권을 장악한 지배계급이 저들의 정치적목적과 요구에 맞게 사회를 관리하기 위하여 리용하는 수단이다. 국가주권을 장악한 지배계급은 자기의 계급 적리익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법을 제정하고 집행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국가주권을 장악한 로동계급을 비롯한 인민대중의 정치적목적과 요구는 수령의 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집대성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법 이 국가주권을 장악한 로동계급을 비롯한 인민대중의 정치적목적과 요구를 반영하고 그 것을 실현하는 수단이라는것은 바로 수령의 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을 반영 하고 그것을 실현하는 수단이라는것을 의미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법이 수령의 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을 반영하고 그것을 실현하는 위력한 수단으로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법의 제정과 집행, 법의 해석과 적용을 비롯한 법건설과 관련한 모든 활동이 수령의 사상과 당정책에 기초하여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진행되여야 한다. 수령의 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을 정확히 반영하고 그 철저한 관철을 법적으로 보장하는데 사회주의법의 사명과 역할이 있다.

사회주의법치국가가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이 령도하는 법치국가로 된다는것은 바로 정치와 법의 이러한 호상관계를 반영하고있다.

사회주의법치국가는 당이 령도하는 법치국가이며 사회주의법치국가건설은 철저히 당의 령도밑에 진행되여야 한다. 당의 령도밑에서만 사회주의법치국가는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의 법치국가로서의 자기의 혁명적이며 인민적성격을 철저히 고수할수 있으며 사회주의위업수행의 위력한 정치적무기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나갈수 있다.

주체의 사회주의법치국가는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자기 활동의 근본원칙으로 내세우고있는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자신의 힘으로 건설해나가는 법치국가이다.

당의 령도는 우리 식 사회주의의 생명인 동시에 주체의 사회주의법치국가의 생명이다. 당이 령도하는 법치국가라는데 《법지상주의》를 제창하는 자본주의법치국가와 구별되 는 주체의 사회주의법치국가의 근본특징이 있다.

자본주의법치국가는 본질에 있어서《법지상주의》국가이다. 부르죠아어용학자들은《법은 전체 국민의 일반의사이지만 정당의 정치활동은 일정한 계급, 계층의 리익을 대변하므로 정당의 정치활동은 법에 따라야 한다.》고 하는《법지상주의》를 제창하면서 부르죠아독재정치에 《민주주의》의 보자기를 씌워보려고 하고있다. 그러나 《법지상주의》는 독점자본가들의 의사와 리익을 반영한 자본주의법에 모든 사람들을 복종시킴으로써 부르죠아독재를 실현하기 위한데 불과한것이다.

쏘련에서 사회주의배신자들은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적책동에 동조하여 자본주 의복귀의 길을 열어놓을 때에도 그 첫번째 과녁을 쏘베트국가에 대한 당의 령도를 거세 하는것으로 정하였다. 이자들은 《법지상주의》에 기초한 부르죠아법치주의를 통채로 끌어 들여 쏘베트사회주의련방공화국에 대한 쏘련공산당의 령도원칙을 규정하였던 헌법 제6조 를 《공산당도 사법성의 통제하에서 활동》한다는 내용으로 뜯어고쳤다. 그리하여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 사회주의국가에 대한 당의 령도체계가 허물어지게 되였으며 결국 사회주의붕괴라는 가슴아픈 사태가 빚어지게 되였다.

법치국가를 건설한다고 하여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를 거부하는것은 자본주의복귀의 길이며 인민에 대한 배신이다. 그래서 당의 령도를 사회주의법치국가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다.

자본주의법치국가와 구별되는 사회주의법치국가의 특징은 둘째로,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진정한 민주주의적인 법치국가라는데 있다.

원래 법치에 대한 연구는 처음부터 《민주주의적인 정치방식》을 확립하려는 목적에서 진행되였다. 그리고 현대자본주의세계에서 법치에 대한 론의들은 어느것이나 다 《민주주 의》와 련관되여있으며 제국주의자들과 그 사상적대변자들은 자본주의법치국가를 《민주주의 국가》, 자본주의사회를 《법치가 실현되는 민주주의적인 사회》로 미화분식하고있다.

법치가 민주주의적인 사회관리방식이고 법치국가가 민주주의적인 국가이라면 마땅히력사발전의 주체인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의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를 옹호하고 실현하는데 복무하는것으로 되여야 한다. 그것은 진정한 민주주의는 인민대중의 의사를 집대성한정치이며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정치이기때문이다.

인류력사에서 계급의 발생과 함께 국가와 법이 출현한 때로부터 그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법을 주요한 통치수단으로 하여 계급적지배를 실현하여왔으며 력사에는 《법치국가》로 자처하는 나라들도 적지 않게 기록되여있다. 하지만 인류력사의 그 어느 시대에도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법치사상이나 법치국가는 없었다.

제국주의반동들과 그 대변자들이 자본주의국가를 《공정한 법으로 사회를 관리하는 민주 주의적인 법치국가》로 미화분식하고있지만 이것은 근로인민대중을 기만하기 위한것이다. 사 회의 극소수를 이루는 자본가계급의 요구와 리익만을 반영하고 옹호하는 법으로 인민을 통치 하는 자본주의국가가 결코 《공정한 법치국가》, 《민주주의적인 법치국가》로 될수 없다.

민주주의적인 법은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반영한 법이다. 인민의 의사와 요구는 법의 공정성을 가르는 절대적인 기준이다. 인민의 의사와 요구가 정확히 반영된 법만이 진정한 인민의 법으로 되며 그런 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국가만이 진정으로 민주주의적 인 법치국가로 될수 있다.

사회주의법치국가는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이 반영된 인민의 법으로 국가와 사회를 관리하는 법치국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진정한 민주주의적인 법치국가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인민대중은 국가주권의 주인이다. 국가주권의 주인으로서의 인민대 중의 지위는 중요하게는 자신들의 요구와 리익을 반영하여 국가정책을 수립하고 법을 제 정하는데서 표현된다.

인민대중은 자신들의 진정한 대표들로 인민주권기관을 조직하고 주권기관을 통하여 자신들의 요구와 리익이 반영된 법을 제정한다. 인민의 진정한 대표들로 구성된 인민주권 기관에서 채택되는 모든 법들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요구와 리익을 반영하게 된다. 사회 주의국가는 사회의 발전과 함께 끊임없이 높아지는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요구와 리익을 반영하여 국가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빠짐없이 규제하기 위한 법규범들과 규정들을 제정공포하기 위한 법제정사업을 심화발전시켜 사회주의법체계를 완비해나간다.

사회주의국가는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요구와 리익을 반영하여 법체계를 완비해나갈

뿐아니라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반영한 사회주의법으로 관리해나간다. 사회주의국가가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반영하여 법을 제정하고 법체계를 완비해나가는것은 그자체에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라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제도와 질서를 철저히 세워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법적으로 옹호하고 실현해주려는데 있다.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인민의 자주적인 요구와 리익을 법적으로 옹호하고 실현해나가려면 국가관리, 사회관리를 철저히 법적요구대로 진행해나가야 한다. 그것은 법이 국가관리, 사회관리의 기본수단이며 법에 의거한 국가관리, 사회관리를 실현해나갈 때만이 전사회적으로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옹호하고 실현해줄수 있는 제도와 질서가 철저히 수립될수 있기때문이다.

사회주의법은 국가에 의하여 제정공포된 전사회적인 행동준칙이다. 사회주의법은 사회주의사회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 모든 성원들에게 의무적이다. 사회주의사회에 법적규제밖에 있는 부문이나 분야, 사회성원이란 있을수 없다. 그런것으로 하여 사회주의법을 전반의무성을 띤 사회생활규범이라고 하는것이다. 사회주의국가는 이러한 전사회적인 행동준칙인 사회주의법을 무기로 하여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관리해나간다.

사회주의국가가 국가관리, 사회관리에서 법을 중시하고 법에 의거하여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관리해나가는 법치를 실현한다는것은 곧 법으로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요구와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고 실현해나가는 혁명적인 제도와 질서를 확립해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의사와 요구를 정확히 반영한 인민의 법으로 국가와 사회를 관리해나가는 법치국가,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진정한 민주주의적인 법치국가라는데 사회의 극소수를 이루는 자본가계급의 요구와 리익만을 반영한 법이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의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를 유린말살하는데 복무하는 자본주의법치국가와 구별되는 사회주의법치국가의 본질적특징이 있다.

자본주의국가기구체계에서 립법권을 행사하는 기관으로 인정되고있는 국회는 철두철미 자본가계급의 대표들로 구성되여있으며 이러한 국회에서 채택하는 모든 법률들은 어느것이나 다 독점자본의 탐욕적인 요구와 리익만을 반영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국주의반동들과 그 사상적대변자들은 자본주의나라의 국회를 사회의 각 계급과 계층의 대표들로 구성된 《국민대표기관》으로 묘사하면서 마치도 국회 에서 채택되는 법률에 《국민전체의 요구와 리익》이 반영되는듯이 기만하고있다. 그러면서 《국민전체의 요구와 리익》을 반영한 《초계급적인 법률》에 기초하여 진행되는 자본주의법 치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적인 정치》로 되며 《일정한 계급의 리익만을 옹호해주는 사회 주의정치는 독재》라고 비방중상하고있다.

그러나 이것은 흑백을 전도하는 궤변에 불과하다.

자본주의법치는 어느때에도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한적이 없으며 오직 자본가 계급의 리익실현에만 복무하여왔다. 근로인민대중을 위한 법치,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민주주의적인 법치는 오직 인민대중이 국가주권의 주인으로 된 사회주의사회에 서만이 실현될수 있다.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요구와 리익실현에 복무하는 진정한 민주주의적인 정치라는데 사회주의법치의 참다운 우월성이 있다.

자본주의법치국가와 구별되는 사회주의법치국가의 특징은 셋째로, 인민대중의 높은 정치적자각성에 의거하여 온 사회에 정연한 법질서가 확립된 법치국가라는데 있다.

어떤 류형의 국가나 법치를 하는 목적은 전사회적으로 제도와 질서를 세우려는데 있다.

고대시기로부터 현대자본주의사회에 이르기까지 인류력사의 여러 단계에서 제창되였던 법치사상들은 그 계급적성격과 법치실현의 구체적인 방법에서는 차이가 있었지만 전사회적으로 《혼란과 무질서》를 극복하고 《정연한 제도와 질서의 확립》이라는 공통적인목적을 가지고있었다.

고대중국에서 법치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던 《법가》는 무너져가던 노예소유자사회의 혼란된 정국을 바로잡고 《제도와 질서》가 확립된 중앙집권적인 통일국가를 세우려던 신 흥지주계급의 요구를 반영하여 법치를 주장하였다. 고대로마의 대표적인 법사상가인 키케 로도 끊임없는 침략전쟁으로 세계적인 판도에로 팽창되여가던 로마제국내부에서 일어나 는 지배민족(로마인)과 정복지역의 민족들과의 대립의 격화, 로마노예소유자귀족내부에서 의 구귀족과 신귀족사이의 대립과 갈등의 심각화를 막고 원로원을 중심으로 하는 제도와 질서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민주주의적인 법치》를 고창하였다.

근대초기 부르죠아계몽사상가들도 분권적인 봉건사회제도를 반대하고 자본주의적인 제도와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법치를 제창하였다.

그러나 계급들사이의 리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여있는 착취사회에서는 아무리 법 치에 대하여 떠들어도 전사회적으로 《정연한 제도와 질서》를 공고하게 수립할수 없었다.

제도와 질서가 전사회적으로 공고하게 확립되려면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높은 정치적자각성에 기초하여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을 준수하고 집행해나가야 한다. 폭력과 강권에 의하여 강압적으로 수립된 제도와 질서는 공고하지 못하며 그러한 사회는 쉽게 혼란과 무질서에 빠져들게 된다. 이러한 실례는 착취자국가의 력사에서 흔히 찾아볼수 있다. 대표적으로 제도와 질서가 확립된 통일적인 봉건국가수립을 위하여 법치를 주장하였던 《법가》의 사상을 받아들여 고대중국의 진나라의 통치배들은 저들의 통치질서를 유지하기위하여 인민대중에게 가혹한 형벌들을 들씌웠지만 나라는 끊임없는 혼란속으로 더욱 깊숙이 빠져들었으며 끝내는 망하게 되였다. 이에 대하여 한무제시기의 유교적인 봉건정통법률사상을 내놓은 동중서는 《덕주형보》 다시말하여 덕을 기본으로 하면서 형을 보조로할데 대한 사상을 제기하면서 《진나라(법가의 법치사상을 받아들여 세워진 중국의 첫 봉건국가)가 바로 도덕교화를 하지 않고 신도나 한비의 말에 따라 오직 가혹한 형벌로만다스리려고 하였기때문에 곳곳에서 도적이 일어나고 간악한 범죄가 그치지 않게 되였으며 이로 말미암아 결국은 나라를 망치게 하였다.》고 비난하였다.

오늘 현대 자본주의국가에서도 반동통치배들이 각종 악법들을 조작하여 인민대중에 대한 억압을 강화하면서 어떻게 하나 저들의 통치질서를 유지하려고 하지만 자주성을 위 한 인민대중의 투쟁은 결코 가로막을수 없다.

법규범과 규정에 대한 자각적인 준수집행은 오직 모든 사회성원들의 리해관계가 통일되여있고 법이 근로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반영하여 제정되고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에 맞게 집행되는 사회주의사회에서만이 실현될수 있다.

물론 사회주의사회에서도 법에 대한 준수집행은 의무성을 띤다. 의무성을 떠난 법은 벌써 법이 아니다. 그러나 사회주의사회에서 사회성원들의 법준수집행에 대한 의무성은 폭력과 강권에 기초한 의무성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높은 영예감에 기초 한 의무성이다.

사회주의사회의 모든 법규범과 규정들은 근로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반영하여 근로인민대중자신이 제정한것이며 인민의 리익실현에 복무한다. 그런것으로 하여 근로인민대중은 사회주의법규범과 규정들을 존엄있게 대하고 그것을 성실히 준수하고 집행해나가는것을 응당한것으로, 의무이기전에 공민으로서의 영예로 간직하게 된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높은 정치적자각을 지니고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을 자각적으로 성실히 준수하고 집행해나가는 속에 사회주의사회에는 전사회적으로 정연한 제도와 질서가 공고하게 수립되게 된다.

인민대중의 높은 정치적자각성에 의하여 안정된 사회생활질서, 법질서가 철저히 확립된 법치국가라는데 폭력과 강압, 회유와 기만으로 통치계급의 지배질서를 강제적으로 유지해나가는 자본주의법치국가와 구별되는 사회주의법치국가의 중요한 특징이 있다.

법이 사회의 극소수를 이루는 독점자본가계급의 의사만을 반영하고 그 리익실현에 복무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아무리 《민주주의적인 법치》에 대하여 떠들어도 근로인민 대중이 스스로 법을 지키고 법을 집행하는 자각적인 법준수집행에 대하여 생각조차 할수 없다. 자본주의법은 독점자본가계급의 강권통치의 도구이며 그것은 사회에 강압적으로 적용되게 된다.

이처럼 법이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을 철저히 옹호보장하고 인민대중이 법을 자각적으로 성실히 준수집행해나가는 인민대중중심의 법치국가라는데 주체의 사회주의법 치국가의 혁명적본질, 근본특징이 있다.

우리는 주체의 사회주의법치국가의 혁명적본질과 특징에 대한 옳바른 과학적리해를 가지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우리 식의 사회주의법치국가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사회주의법치국가, 민주주의